

제209회 임시회
2003. 2. 14(금)

심 사 보 고 서

○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심 사 결 과 보 고

1. 회부조례안

-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월 27일(충청북도지사)
- 나. 회부일자 : 2003년 1월 28일
- 다. 상정일자 : 2003년 2월 12일(제209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3. 제안설명요지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충북과학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증명발급 종류를, 학위수여, 교직과정이수 등, 2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 각종 증명수수료의 단가 인상 및, 증명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 국문증명은(1통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 영문증명은, 외국문증명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단가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는 내용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의 개정안은, 대학측에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증명발급 대상의 종류를 신설하고, 수수료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결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충북과학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증명발급 종류를 일부추가 신설하고 각종 증명 발급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증명발급 종류 추가 신설(2종)
 - 학위수여(예정)증명
 -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 각종 증명수수료 조정
 - 국문증명 1통당 200원 → 300원
 - 영문증명 1통당 300원 → 외국문증명 1통당 500원

3. 의안전문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관계법령발췌 : 따로붙임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각종증명별 수수료표의 종류란중 제12호 다음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수수료란중 “200원”을 “300원”으로, “영문증명 1통당 : 300원”을 “외국문증명 1통당 : 500원”으로 한다.

13. 학위수여(예정)증명
14.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각종증명별 수수료표			[별표] 각종증명별 수수료표		
종류	수수료	비고	종류	수수료	비고
1. 입학증명	• 국문증명 1통당: 200원	이 표에 규정 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 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 수료를 징 수하지 아 니함.	1.....	• 국문증명 1통당 200원	
2. 합격증명	• 영문증명 1통당: 300원		2.....	• 외국문증명 1통당 200원	
3. 재학증명			3.....		
4. 휴학증명			4.....		
5. 복학증명			5.....		
6. 재직증명			6.....		
7. 재직증명			7.....		
8. 수료(예정)증명			8.....		
9. 졸업(예정)증명			9.....		
10. 성적증명			10.....		
11. 학위 성적 특수 증명			11.....		
12. 교육비납부증명			12.....		
(신설)			13. 학위수여(예정)증명		
(신설)			14. 교과과목이수(예정)증명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별표]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표

증명의 종류	수수료의 금액	비 고
1. 입학증명	1통당 국문증명의 경우에는 300원, 외국문증명의 경우에는 500원	이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에는 다른법령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2. 합격증명		
3. 재학증명		
4. 휴학증명		
5. 복학증명		
6. 재적증명		
7. 제적증명		
8. 수료(예정)증명		
9. 졸업(예정)증명		
10. 성적증명		
11. 학위수여(예정)증명		
12.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13.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		
14. 교육비 납입증명		